

제678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서울 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
- 심 사 일 : 2013. 6. 28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180,000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0일
 - 사업규모 : · 부지면적 : 109,691㎡(대지 55,382㎡, 폐하천부지 6,832㎡, 임야 47,477㎡)
· 기존 건축물 : 28개동 51,344㎡ (리모델링 5개동)
- 심사결과 : 적 정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 혁신파크조성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공간조성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최적의 시설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 됨. 일림 : 주요공종이 자체설계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산정방식 :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-750호】적용 - 신청금액 : 180,000,000원 - 심사금액 : 180,000,000원
3. 조건부여 이행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 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, 심의절차 이행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주부서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 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바람 -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과업기간을 정할 것. - 사업시행의 제반 법규검토 사항을 명시할 것. -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[별표1] 기획업무를 참고하여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. (설계 지침서 작성, 공간 프로그램 계획, 기존 유사시설물 조사비교 등) - 「업무협약 및 공정보고」에 중간보고 시 내용과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. - 성과품 목록을 도표로 작성하고 용역결과 보고서는 납품 부수를 조 정요함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면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 - 용역비 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 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와 내용을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바람.